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 대구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광현

전화 053-740-4355 / 팩스 0502-193-5453

보도자료  
2025. 1. 20.(월)

제 목

### 대구지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 엄단 - '24년 1년간 위증사범 총 41명 적발 -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2부(부장검사 유정현·곽계령)는 '24. 1.부터 '24. 12.까지 1년간 사법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41명을 적발**한 후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하였습니다.
-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인 위증 사범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 '22년 한 해 11명이었던 위증사범 적발인원이, '23년에는 29명(전년 대비 160% ↑), '24년에는 41명(전년 대비 70% ↑)으로 증가하였고,
  - 특히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24. 11. 한 달 동안에만 휴대전화 포렌식, 출장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총 2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위증 수사 사례

### ① 동료 조직폭력배 등의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한 사례

- A(C와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B(C의 조카)는 C의 도박장소개설 등 사건 재판에서, "C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
- 대상 기록 및 판결, C의 접견녹취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A, B가 조직적·계획적으로 허위 진술한 사실을 밝혀내 A, B를 위증 혐의로 인지하고, 각 불구속 기소

### ② '던지기' 수법 마약매도 공범이 위증한 사례

- A는, 자신과 함께 지난 '18.경 약 10.5g 상당의 필로폰을 빌라 전기단자함 등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매도한 공범 B의 재판에서 "B는 운전만 했을 뿐 필로폰을 숨긴 사실이 없고, 필로폰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
- 범행 당시 A와 상선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A가 B에게 '자백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접견녹취록을 확보하여 A를 위증 혐의로 인지하고, 불구속 기소

### ③ 이웃의 특수상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피해자 등의 단체 위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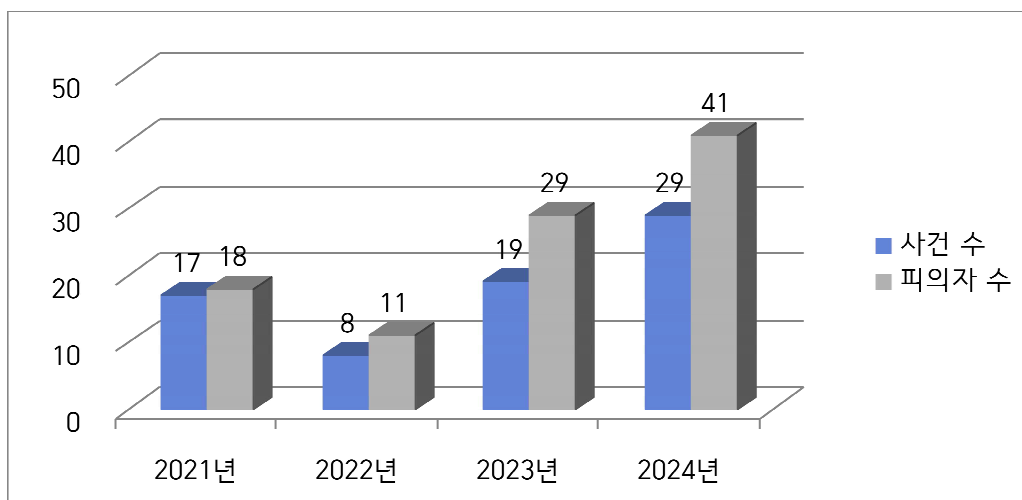
- A(피해자), B, C(각 목격자)는 이웃주민인 D의 특수상해 사건 재판에서, "D가 A에게 중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
-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여, 112신고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A, B, C를 추궁하고, 누범 기간 중인 D가 실형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위증하였다는 자백 진술을 확보한 후 위증 혐의로 인지하고, 각 약식 기소

- 대구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수사과 재판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I 개요

- 위증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회피하게 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
  -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의 공판환경 변화에 따라,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2. 9.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가 포함되었음
  - 이를 토대로, 대구지방검찰청은 '24. 11. 최근 2년간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조사하여,  
- 자칫 압장될 뻔한 위증사범 총 21명을 인지한 것을 비롯하여, '24년 한 해 동안 총 41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하였고, 이는 전년(29명) 대비 70% 증가한 숫자임
- \* '22. 9. 수사개시 범위 규정 개정 전인 '22.(11명) 대비 3.7배

〈대구지방검찰청 연도별 위증사범 인지 현황〉



## ① 동료 조직폭력배 등의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한 사례

- (사안 개요) A와 B는, A와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자 B의 외삼촌인 C가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 사건으로 재판 받게 되자,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는 'C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 받아 개인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B는 'C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에서 근무했다는 경찰 단계 진술은 거짓이고 사실은 게임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 (수사 경위) 일부 증인이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음을 확인한 후, 대상 기록 및 판결문, 접견녹취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위증 혐의 명확히 한 후 불구속 기소
- (수사 의의) 조직폭력배 출신 또는 인척 관계를 빌미로 법정에서 실제적 진실 왜곡을 시도한 위증사범을 엄단함

## ② '던지기' 수법 마약매도 공범이 위증한 사례

- (사안 개요) A는, '18.경 함께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약 10.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한 공범 B가 '24.경 해당 사건으로 재판 받게 되자,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는 운전만 했지 필로폰을 숨기지 않았고, 봉투에 든 물건이 필로폰이 아닌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줄로 알고 있었다'고 허위 증언
- (수사 경위) B와 함께 범행하였다는 A의 수사단계 진술, A와 상선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A가 B에게

‘자백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접견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분석함으로써 위증 사실 밝혀내 불구속 기소

- (수사 의의)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위증 사실 규명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위증으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를 방지하였음

### ③ 이웃의 특수상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피해자 등의 단체 위증 사례

- (사안 개요) A(피해자), B(목격자), C(목격자)는, 이웃주민인 D가 중식칼을 들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재판 받게 되자, 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는 ‘내 상처는 중식칼로 인한 것이 아니다.’, B는 ‘A와 D가 싸우는 것조차 목격하지 못하였다.’, C는 ‘내가 신고한 내용은 주위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말한 것이고, A의 얼굴에 피가 나는 것만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 (수사 경위) 최초 112 및 119 신고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A, B, C의 진술에 관하여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당사자 조사를 통해 자백 진술 확보하여 각 약식 기소
- (수사 의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누범기간 중인 D가 실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부터 목격자까지 단체로 위증한 사안 관련,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 수사로 위증사범 3명을 인지·기소하여 엄단함

그 외에도,

- ▶ 허위세금계산서 폭탄업체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위증한 사건
- ▶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한 사건
- ▶ 배우자, 동생 등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증한 사건

등을 포함하여 위증사범 41명을 적발하였음

※ 별첨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참조



## 향후 계획

- 앞으로도 대구지방검찰청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위증 범죄의 중대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별첨]

■ 피고인(40명) 및 공소사실 요지

※ 총 41명 중 수사 중인 사건(1명) 제외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리결과
1	A(남, 23세) B(남, 24세) C(남, 17세) D(남, 18세) E(남, 18세)	A, B는 동네 후배인 C 등에게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절도하도록 교사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C 및 그 사실을 알고 있는 D, E에게 “A, B는 금은방 절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23. 5.경 및 10.경 C, D, E는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 <b>【위증 및 위증교사】</b>	각 불구속 기소
2	A(남, 32세) B(남, 35세)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A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하위 중계기 관리책 B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B는 '23. 7.경 대구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A가 B에게 중계기 설치 및 관리 범행을 제안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 및 위증교사】</b>	각 불구속 기소
3	A(남, 23세) B(남, 23세)	불법 문신 시술업자인 A는 의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B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B는 '23. 12.경 대구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는 문신 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 및 위증교사】</b>	각 불구속 기소
4	A(여, 35세)	'23. 3.경, B의 관세법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가 중국에서 명이나물을 위탁 가공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B는 명이나물을 수입하기 전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불구속 기소
5	A(여, 45세)	'23. 6.경 동생 B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가 과도를 들고 C를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B가 과도를 든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약식 기소
6	A(남, 61세)	'23. 7.경 B의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의 공범으로서 B와 함께 C에게 대출 명의자를 소개하고 금융기관에 동행하였음에도,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B를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불구속 기소
7	A(남, 49세)	'23. 9.경 B의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가 C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불구속 기소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리결과
8	A(남, 55세)	'24. 1.경 B의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A가 직접 C에게 '압류만 해제해주면 B가 5,000만 원을 변제 해준다고 한다'는 말을 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말을 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약식 기소
9	A(여, 59세) B(여, 72세)	'24. 4.경 공장 기계의 방호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C,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회사 상사인 C, D의 지시를 받아 'C, D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확실적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실확인서는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다른 자료 등을 참고하지 않고 생각나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각 약식 기소
10	A(남, 27세) B(남, 47세)	'23. 9.경 및 '23. 10.경 C의 도박공간개설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는 사실 C가 운영하는 구미시 소재 불법 게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B는 사실 C로부터 위 게임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C로부터 위 게임장을 인수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각 불구속 기소 (주요사례①)
11	A(남, 49세)	'24. 1.경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와 함께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는 범행을 하면서, B에게 봉투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필로폰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B는 봉투 안에 든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불구속 기소 (주요사례②)
12	A(남, 61세)	'23. 3.경 부친 B의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A가 B를 대리하여 C에게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불구속 기소
13	A(여, 37세)	'23. 6.경 남편 B의 특수협박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B가 C에게 칼을 보여주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B가 C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약식 기소
14	A(남, 52세) B(남, 44세)	'23. 3.경 및 '24. 6.경, C, D가, 근로자 E의 급여를 대신 보관 하던 중,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E가 C, D에게 자신의 급여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각 불구속 기소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리결과
15	A(여, 39세)	'23. 6.경, B가 배우자인 C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를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가 자신의 급여를 받지 않음으로써 C 명의 급여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C 명의 급여를 정산하기 위해, 스스로 8개월간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불구속 기소
16	A(남, 64세)	'23. 12.경, B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빌라에 정상적인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C를 속여 돈을 빌린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위 빌라의 소유주로서 B에게 위 빌라가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이 동일한 소위 '깡통전세'임을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불구속 기소
17	A(남, 50세) B(남, 42세) C(남, 51세) D(남, 43세)	'22. 3.경, '22. 6.경, '22. 12.경, E가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 발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E에게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정상적으로 폐동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각 불구속 기소
18	A(남, 35세)	'24. 10.경, B가 '20. 5.경부터 '23. 8.경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 재판에서, 사실은 B가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에도, "B는 '23. 3.경 이전까지는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불구속 기소
19	A(남, 33세)	'23. 11.경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가 마약 밀반입 조직 총책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것임에도, "B는 자신이 운반하는 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불구속 기소
20	A(남, 23세) B(남, 22세)	'22. 6.경 C, D, E, F, G의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C, D, E, F, G가 조직폭력배인 A와 함께 B를 찾아가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C, D, E, F, G는 B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각 불구속 기소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리결과
21	A(남, 61세)	'22. 6.경 B의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가 C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먼저 진행해주면, 아파트가 매매 또는 임대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불구속 기소
22	A(남, 63세)	'22. 12.경 B의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가 C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대출을 추가로 신청해서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약식 기소
23	A(남, 64세)	'23. 12.경, B가 A로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2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A가 B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B에게 20만원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약식 기소
24	A(여,60세)	'23. 7.경 B의 모욕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가 C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B가 욕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약식 기소
25	A(남,51세) B(남,47세) C(여,68세)	'24. 3., 7., 8.경 D의 특수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D가 중식칼을 들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보고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A는 "나의 상처는 D의 중식칼로 인한 것이 아니다", B는 "A와 D가 싸우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 C는 "내가 신고한 것은 맞지만 D가 A를 공격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 <b>【위증】</b>	각 약식 기소 <small>(주요사례③)</small>